

전주지방법원 2020. 7. 1 선고 2019나920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전주지방법원 2020. 7. 1 선고 2019나9203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8가단23263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세영

피고, 피항소인B

변론 종결2020. 6. 3.

판결 선고2020. 7. 1.

제1심판결전주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8가단23263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454,54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2016. 7. 6.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2.항까지는 '원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G은 2014. 1. 25.경 C와 사이에 'C가 2014. 2. 1.부터 1년간(기간만료 시 연장 가능) 회사 운영비 및 세금을 모두 부담하여 위 회사를 위탁경영하되, 그동안 발생하는 공사 이익금은 C가 가져가기로 한다'는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하였고, C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2014. 2. 3.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나. C는 2014. 5. 29.경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로부터 D 개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 공사대금 702,287,000원에 수주하여 이를 피고 및 H에게 일괄 하도급 주면서 그들로부터 공사부금(총 1억 1,9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H와 사이에 'H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고, 피고는 원고 회사에 위 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H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피고는 원고 회사에 선부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G과 C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두 사람은 2015. 3. 20.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하면서, C가 대표이사로서 수주한 이 사건 공사 등을 C의 책임 하에 준공하고 그 공사대금은 C에게 귀속시키며, C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작성하였고, 이후 C는 2015. 3. 23.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으며, 그때부터 다시 G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마. 한편, 중장비업자인 E, I, J, K, L(이하 'E 외 4인'이라 한다)은 2015. 4.경 피고의 부탁을 받고 실제 장비 사용이 없었음에도 원고 회사에 각 1,000만 원 상당의 장비사용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

바. C는 2015. 4. 16. 위 세금계산서에 따라 E 외 4인에게 각 1,000만 원씩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E 외 4인은 위 금원에서 부가가치세 4,545,455원을 공제한 나머지 45,454,545원을 다시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회사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회사의 주장

피고는 실제 장비 사용이 없었음에도 E 외 4인에게 부탁하여 그들로 하여금 원고 회사에 각 1,000만 원 상당의 장비사용료를 청구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원고 회사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도록 하고 다시 그들로부터 45,454,545원을 송금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 회사에 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E 외 4인이 2015. 4.경 피고의 부탁을 받고 실제 장비 사용이 없었음에도 원고 회사에 각 1,000만 원 상당의 장비사용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C를 통하여 원고 회사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부가가치세 4,545,455원을 공제한 나머지 45,454,545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회사는 피고 및 H과의 일괄 하도급계약에 따라 발주처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사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 및 H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와 H 사이의 합의에 따라 피고는 공사부금 지급의무를 담당하고, H이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을 담당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와 H 사이의 정산문제에 불과할 뿐으로서, 원고 회사와 피고 및 H 사이의 위 일괄 하도급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위 일괄 하도급계약이 그 후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성고 지급의무가 있는 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② 이러한 연유로 피고는 E 외 4인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삼아 C에게 원고 회사가 발주처로부터 받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5,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던 것이고, 이에 C가 E 외 4인에게 각 1,000만 원씩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며, E 외 4인은 위 금원을 송금받은 후 바로 일부 금액을 제외한 금원을 피고에게 다시 송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회사 주장과 같이 금원 지급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방법이 사용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 회사로부터 E 외 4인을 통하여 피고에게 송금된 금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가 2014. 2. 1.부터 1년간(기간만료 시 연장 가능) 회사 운영비 및 세금을 모두 부담하여 위 회사를 위탁경영하되, 그동안 발생하는 공사 이익금은 C가 가져가기로 한다'는 G와 C 사이의 이 사건 협약 내용에 의할 때, C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수주한 이 사건 공사는 C가 처리하고 그 공사대금도 C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G은 C와 E 외 4인이 위 금원 상당액을 업무상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전주지방검찰청에 진정(2015진정제271호) 및 고소(2015형제25822호)를 하였는데, 위 각 사건에서도 2016. 1. 19. 및 2016. 3. 28. 'C가 대표이사로서 수주한 이 사건 공사는 C가 처리하고 그 공사대금도 C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5000만 원을 하도급업자인 피고에게 지출한 행위에 횡령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각 불기소처분이 되었던 점, ③ G은 위 2015진정제271호 사건에서 수사기관에 'C에게 원고 회사 운영을 위탁하면서 잔고가 없는 원고 회사의 계좌를 넘겨주었고, 위탁기간 동안 약정 금액을 지급하고, 세금 문제만 해결하면 다시 자신에게 잔고가 없는 원고 회사의 계좌를 돌려주면 된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따르더라도 위탁기간 동안 원고 회사가 수령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처분 권한은 원칙적으로 C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2015. 3. 20.자 합의서에 따른 정산은 별개의 문제이다) 등을 고려할 때, 원고 회사에 궁극적으로 피고에게 송금된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 중단과 그 마무리 비용지출 및 여러 소송에 휘말리게 된 손해 등도 주장하나, 이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피고로의 송금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나상훈

판사오창민

판사조지환